

연금저축 지원제도 안내

kt·kt노동조합



“회사 지원 연금저축 금융기관의 수익률이 낮아 금융기관을 변경하고 싶은데, 어떻게 해야 하나요?”

- ✓ 연금저축 금융기관 및 상품 변경은 지정된 기간 내 신청해야 하며, 신청기간은 시행일 전 전사 공지·문서로 안내됩니다.

연금저축 지원제도 세부 안내

■ 연금저축 변경 방법

- 내용 : 금융기관간 이동(계좌이동) 및 금융기관 내 상품 변경
- 신청기간 : 연 2회(4월, 10월)
※ 지정된 신청기간 외 변경 시 연금저축 해지로 간주되어 회사지원금이 중단되오니, 이점 주의바람
- 대상 금융사 : 현재 회사에서 연금저축을 지원중인 금융기관 限
- 신청방법 : 금융기관에 내방하여 계좌이동/상품변경을 신청 후 증빙서류를 ERP에 등재
※ 계좌이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 가입중인 금융기관에 확인 필요
- 증빙서류 : ① 계좌이체 증명서 (금융기관간 계좌이동이 발생하였음을 증빙)
② 거래내역서 (기존 계좌의 잔고 전액이 이체되었음을 증빙) ③ 계좌사본
※ 금융기관 내 상품변경인 경우는 ②, ③번 서류만 필요하며, 단순 금액변경 시에는 증빙서류 불필요

✓ 기타 안내사항

- 개인추가 납입금 변경은 매월 1~10일 'ERP>HR>개인업무>복지후생>연금저축>연금저축(변경)'에서 신청 가능(가입중인 금융기관에 금액 변경이 가능한지 사전 확인 必)

무엇이든 물어보세요

Q. 자녀 의료비 대상 등록 | “자녀가 만 21세가 된 후 자동으로 ERP 시스템의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, 왜 그런가요?”

- ✓ 만21세 이상 자녀는 직원의 건강보험증 등재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1회 의료비 지원 대상으로 재등록 후 승인 받아야 합니다.

- 등록방법 : 'ERP>HR>개인업무>복지후생>신청>의료비(대상등록)'에서 자녀등록
※ 건강보험공단(T.1577-1000)에 자녀의 피부양자자격확인서 요청 후 첨부